Department of Education

등록 체크리스트

학교 등록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❑ **자녀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**(출생증명서나 여권, 세례 증명서)
- ❑ **자녀의 예방 접종 기록** (있는 경우)
- ❑ **학생의 가장 최근 성적표/성적 증명서**(있는 경우)
- ❑ **거주지 주소 증빙을 위한 서류 다음 중 2 가지**
  - ❑ 거주자의 임대 계약서, 집문서, 또는 모기지 고지서
  - ❑ 유틸리티 회사(National Grid 또는 Con Edison 등)에서 발급한 거주자의 성명이 적힌 주거용 공과금 고지서(가스 또는 전기); 반드시 발급한 지 60 일 이내의 것이라야 함
  - ❑ 발급된 지 60 일 이내의 주거용 케이블 TV 고지서 (학부모 성명 및 거주지 주소가 명시된 것);
  - ❑ 지난 60 일 이내에 국세청(IRS), 뉴욕시 주택청, 연방 난민 지원실, 인적 자원국(HRA), 아동 복지국(ACS) 또는 아동 복지국 계약처 등을 포함한 연방 정부,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,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문서 또는 레터헤드가 찍힌 편지
  - ❑ 거주자의 현재 재산세 납부 고지서
  - ❑ 주거용 상수도 고지서(반드시 90 일 이내 발급된 것이라야 함)
  - ❑ 집 주소가 포함된 렌트 영수증-반드시 지난 60 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.
  - 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, 시, 또는 기타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(IDNYC 카드 포함)으로서 집주소가 적혀있는 것
  - ❑ 전년도 소득세 보고 양식
  - 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식 뉴욕주 운전면허증이나 임시 운전 허가증
  - ❑ 지난 60 일 이내 발급된 세금 원천징수나 집 주소가 적혀있는 급여 수령 명세서 등, 고용주가 발급한 공식 급여 명세서(고용주의 레터헤드를 사용한 편지는 인정되지 않음) 반드시 집주소가 적혀 있고 발급 60 일 이내의 것
  - ❑ 유권자 등록 서류(학부모 성명 및 거주지 주소가 명시된 것)
  - ❑ 거주지로 결정되는 각종 멤버십(가령 주민 협회 등)으로서 학부모의 성명 및 거주지 주소가 명시되어 있고,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
  - ❑ 발급한 지 60 일 이내의 법적 양육권 지정 명령 또는 후견인 문서, 또는 이와 유사한 자녀 양육권 증빙서류로서 아동의 성명과 집주소가 적혀 있는 것.

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정을 위한 안내

매키니-벤토 법에 의거하여 임시 거주지에 기거하는 학생들은 학교 등록 시 상기 구비서류(주소 증빙, 출생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)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학교들은 반드시 이러한 학생들을 임시로 예비 등록시킨 후에, 교육청의 임시 거주지 학생 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.